

심사보고서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06
----------	-----

2021. 9. 3.(금)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1년 8월 25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8월 27일

라. 상정일자 : 2021년 9월 3일

-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수정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오세동 행정국장)

가. 제안사유

○ 현행 청남대 입장료 현실화 필요성을 반영하고 입장료 할인 범위 확대 및 중복 할인 규정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청남대 입장요금 조정(안 별표1)

- 현행 어른 주간 5,000원, 단체/야간 4,000원 → 6,000원, 5,000원

○ 입장료 할인 범위 확대 (안 제4조)

- 기관 단체 및 사업체의 행사 등에 참석한 후 그 영수증(확인서 등)을 소지한 개인·단체가 다음 날까지 입장할 때 → (생략) 행사 기간 종료 후 3일 이내 입장하는 경우
- 그 밖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남범우)

- 이 개정조례안은 청남대 입장요금 현실화를 위해 기존 어른 입장요금을 1,000원 인상(주간 5,000원→6,000원, 야간/단체 4,000원→5,000원)하는 것과
- 입장요금 할인의 경우 행사 종료 후 다음 날까지 청남대에 입장하는 경우에서 행사기간 종료 후 3일 이내 입장하는 경우로 개정하고 그 밖에 도지사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이 가능하도록 신설하는 것임.
- 매년 물가가 인상되는 점과 한번 책정한 입장요금을 재차 인상하는 것은 부담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입장요금 인상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현재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시국에 입장요금 인상으로 운영 개선 효과를 기대할 지는 의문임. 또한 조례로 입장요금을 정하는 것은 도민에게 부담이 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기관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음에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할인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 9 .3. 박상돈 의원

○ 수정이유

- 코로나19로 인한 관람객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자 시행일을 조정함.

○ 수정내용

- 부칙 제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조를 삭제함.

단, 제4조제3항 및 별표 1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중복하여 할인하지 아니한다.

2. 소장과 사전 협의하여 관광협약을 체결한 기관 단체 및 사업체,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고 행사기간 종료 후 3일 이내 입장하는 경우: 별표 1의 입장요금에서 1천원을 할인

3. 그 밖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의 입장요금에서 1천원 할인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제3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 입장에 대한 예약을 완료하였거나 관광시설을 관람 중인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입 장 요 금 표

(단위 : 원)

구 분	개 인	단 체 야간개장 [17:30이후]	비 고
어 른	6,000	5,000	19세 ~ 64세
청소년	4,000	3,000	13세 ~ 18세
군 경 등			하사 이하의 자와 전투경찰순경 · 의무소방원
어린이	3,000	2,000	7세 ~ 12세
노 인			65세 이상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입장료)</p> <p>① ~ ② (생략)</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료를 할인하여 징수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소장과 사전 협의하여 관광협약을 체결한 <u>각종 기관 단체 및 사업체의 행사 등에 참석한 후 그 영수증(확인서 등)을 소지한 개인·단체가 다음 날까지 입장할 때</u> : 별표 1의 입장요금에서 1천원을 할인</p> <p>3. <u>충청북도가 주관하는 국제행사 등에 참석한 후 그 영수증(확인서 등)을 소지한 개인·단체가 다음 날까지 입장할 때</u> : 별표1의 입장요금에서 2천원을 할인. <u>단, 단체입장 어린이 및 노인은 1천원 할인</u></p>	<p>제4조(입장료)</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료를 할인하여 징수한다. <u>다만, 중복하여 할인하지 아니한다.</u></p> <p>1. (현행과 같음)</p> <p>2. ----- ----- <u>기관 단체</u> <u>및 사업체,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고 행사기간 종료 후 3일 이내 입장하는 경우</u> : 별표 1의 입장요금에서 1천원을 할인</p> <p>3. <u>그 밖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 별표 1의 입장요금에서 1천원 할인</p>

관련법령 발췌

□ 관광진흥법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 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관광지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6. 5., 2018. 6. 12., 2020. 6. 9.>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조를 삭제한다.

단, 제4조제3항 및 별표 1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부칙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제3항 및 별표 1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제3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 입장에 대한 예약을 완료하였거나 관광시설을 관람 중인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삭 제>